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61호(號) 1929년(昭和 4) 3월 18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75호(號)

조선국유철도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특정(特定)함.

1929(昭和 4)년 3월 18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- 1 품 목(品 目) 토상흑연(土狀黑鉛)
- 1 발 역(發 驛) 황간(黃澗), 영동(嶺東)
함창(咸昌: 조선철도회사선[朝鮮鐵道會社線])
- 1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
- 1 급종별(拔種別) 차급(車拔)
- 1 운 임(運 賃) 보통운임(普通運賃)의 4할(割) 감(減)
- 1 기 간(期 間) 1929(昭和 4)년 4월 1일부터
1930(昭和 5)년 3월 31일까지
- 1 조 건(條 件) 본(本) 화물(貨物)은 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의 특정운임(特定運賃)에 의(依)해 취급(取拔)하고, 매월(每月) 부산세관(釜山稅關)의 동(同) 항(港) 수출증명(輸出證明)이 있는 수량(數量)에 대하여 본(本) 특정운임(特定運賃)을 수정하여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하는 것으로 함.